

[2024년 청년 골목창업 경진대회] 참여자 모집공고

청년들의 창업환경을 조성하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2024년 청년 골목창업 경진대회」에 참여할 청년 창업가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4년 5월 13일

서울특별시

1 모집 개요

공고명	· 2024년 청년 골목창업 경진대회
사업목적	· 예비 또는 초기 청년 창업가(창업 3년 이하)의 성공적인 창업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
지원대상	· 골목상권 내 생활밀접업종 분야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가 또는 3년 미만 기창업가 · 골목창업을 목표로 아이디어/BM을 보유한 개인 또는 팀 · 경진대회에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시연할 수 있는 개인 또는 팀
사업기간	· 오리엔테이션 & 워크숍 : 2024년 7월 1일(월) · 1차 경진대회 ▶ 예비창업가 대상 : 2024년 7월 8일(월) ▶ 기창업가 대상 : 2024년 7월 9일(화) · 비즈니스 워크숍 : 2024년 8월 5일(월) · 현장교육 : 2024년 8월~12월 · 2차 통합 경진대회 & 네트워킹 데이 : 2024년 10월 28일(월) ※사업 일정은 변동 가능성이 있으며, 일정 변경 시 사전 안내 예정
모집기간	· 2024년 5월 13일(월) 10:00 ~ 6월 10일(월) 16:00 까지
신청방법	· 2024 청년 골목창업경진대회 홈페이지 통한 온라인 신청 (authenticity-seoul.kr)
선발인원	· (1단계) 서류심사 : 80개 팀 선발 (선발 인원의 2배수) · (2단계) 면접심사 : 60개 팀 선발 (선발 인원의 1.5배수) · (3단계) 1차 경진대회 : 40개 팀 선발 ▶ 예비창업가 20개 팀, 초기창업가 20개 팀 총 40개 팀 선발 · (최종) 2차 경진대회 : 30개 팀 선발 ▶ 예비창업가, 초기창업가 구분없이 총 30개 팀 선발 ▶ 심사결과에 따라 10개 내외 팀 탈락 가능

2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신청자격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공고일 기준 19세~39세 이하 서울시 거주 청년(1인 또는 2인 이하 팀) ※ 팀원 모두가 서울시 거주 청년(1984.5.14.~2005.5.12. 출생자)인 경우 신청 가능 · 골목상권 내 생활밀접업종 분야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가 또는 3년 미만 초기창업가 (예시) 외식업, 편집숍, 교육, 여행, 의류, 제품 도·소매, 출판 등 100개 생활밀접업종(붙임1) 등 · 경진대회에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시연할 수 있는 자 (예시) 외식업 : 제품 제출·시식 / 기타 업종 : 제품, PPT, 동영상, 홈페이지 등 제출·확인
제외대상	· '2022·2023년 서울시 청년 골목창업 경진대회'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자 · 서울시 지원사업에서 동일한 아이템으로 사업지원을 받았거나 지원 받고 있는 경우 (예시) 서울시 지방보조금 사업 보조사업자 또는 참여자, 로컬크리에이터 양성과정 참여자 등 · 유흥주점업 등 재보증제한업종(붙임2)으로 창업하려고 하는 자 · 기타 서울시장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3 사업 주요 일정



1. 창업아이템 및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유의사항

- 응모 아이디어 제안자의 권리
 - ▶ 제출된 서류에 대한 내용은 접수 및 심사과정에서 비밀 유지
 - ▶ 비밀 유지 원칙에도 불구하고 아이템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주요내용은
**처리하여 본인이 아이템 정보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함
 - ▶ 출품된 응모작 및 수상작에 대한 저작권(저작인격권과 지적재산권) 등 권한은
출품자 본인에게 있음

2. 기타 유의사항

- 참여신청서 및 제출서류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타인의 아이디어, 기술 등을 모방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참가자 본인에게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된 사항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지원자에게 귀속됨
- 1차·2차 창업자금 지원 안내
 - ▶ 대표자 각서 및 팀원의 동의서를 바탕으로 대표자 명의의 통장으로 창업자금을
지급함
 - ▶ 대표자는 제출한 집행계획서에 따라 창업자금을 사용하여야 함
 - ▶ 지원받은 창업자금은 연내 (2024.12.31.) 집행완료 필수
 - ▶ 집행내역 가이드라인에 위반되는 경우, 창업자금 일부금액 또는 전액 환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OT 및 특강, 워크숍에 불참하는 경우, 창업 자금 집행계획서 및 집행결과보고서를
미제출한 경우 등 사업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참여자는 사업기간 중 동영상, 사진 촬영 등 사업 홍보를 위해 적극 협조하여야 함

6 신청 및 접수

신청기간	· 2024년 5월 13일(월) 10:00 ~ 6월 10일(월) 16:00 까지
신청방법	· 2024 청년 골목창업경진대회 홈페이지 통한 온라인 신청 (authenticity-seoul.kr)
제출 필요서류	· (신청서) 온라인 신청 폼 내 기입 ▶ 자기소개 기술 항목, 사업계획 기술 항목 등 온라인 신청 폼 내 기입 필요 · (적격여부 확인 서류) 면접심사 대상자에 한해 아래 서류제출 별도 요청 예정 ▶ 주민등록초본(필수, 팀원 모두) ▶ 사실증명원(필수) - 이력 有 : 총사업자등록내역 - 이력 無 : 사업자등록사실여부 ▶ 관련 경력이 있는 경우(선택) - 건강보험득실확인서, 자격증,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원, 졸업(예정)증명서 등 ▶ 기타 주관사에서 추가 증빙을 요청하는 서류(요청시) ※ 면접심사 이전까지 서류 미제출시, 면접심사 참여 불가 ※ 증빙서류 검토 결과 자격조건 미달 시, 면접심사 참여 불가
신청 유의사항	· 접수시간 준수 ▶ 신청·접수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이전에 사업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 ▶ 6월 10일(월) 16:00 정각까지 접수 마감, 16:01 부터는 신청·접수 불가 · 팀 지원의 경우, 팀 대표 1명이 신청 ▶ 팀 인원 수는 2인 이내

7 평가 및 선정방법

심사절차 및 선정규모	심사절차	세부내용	선정규모
	서류심사	지원자 소개서 및 사업계획서 검토	80개 팀
	면접심사	사업계획서 기반하여 심층 면접	60개 팀
심사기준	· 사업의 참여의지 및 창업의 진정성 · 창업 역량 및 창의성 · 제품 및 서비스 준비도 · 성장가능성 · (서류평가 가산점) 창업 아이템 다양성 제고 및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 발굴을 위한 가산점 부여 ▶ 융합형: 업종·서비스·기술 간 접목을 통한 아이템 또는 경영방안 제출 시 가점 부여 ▶ 골목상생형: 참신하고 구체적인 골목상권 활성화 계획 제출 시 가점 부여		
선정방법	· 서류·면접심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8 문의처

■ 운영사무국 문의 채널

- 2024 청년 골목창업경진대회 홈페이지 내 채널톡 활용 (authenticity-seoul.kr)
- 운영사무국 이메일 : dwjung@urbanplay.co.kr
- 운영사무국 번호 : 070-4919-8870

붙임 : 1. 100개 생활밀접업종 1부
2. 재보증제한업종 1부

100개 생활밀접업종

대 분 류	업 종 수	세부업종
외 식 업	10	한식음식점, 중식음식점, 일식음식점, 양식음식점, 제과점, 패스트푸드점, 치킨전문점, 분식전문점, 호프-간이주점, 커피-음료
서비스업	47	일반교습학원, 외국어학원, 예술학원, 컴퓨터학원, 스포츠강습, 일반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동물병원, 변호사사무소, 변리사사무소, 법무사사무소, 기타법무서비스, 회계사사무소, 세무사사무소, 당구장, 골프연습장, 볼링장, PC방, 전자게임장, 기타오락장, 복권방, 통신기기수리, 스포츠클럽, 자동차수리, 자동차미용, 모터사이클수리, 미용실, 네일숍, 피부관리실, 세탁소, 가전제품수리, 부동산중개업, 여관, 게스트하우스, 고시원, 노래방, 독서실, DVD방, 녹음실, 사진관, 통번역서비스, 건축물청소, 여행사, 비디오/서적임대, 의류임대, 가정용품임대
소 매 업	43	슈퍼마켓, 편의점, 컴퓨터 및 주변장치 판매, 핸드폰, 주류도매, 미곡판매, 육류판매, 수산물판매, 청과상, 반찬가게, 일반의류, 한복점, 유아의류, 신발, 가방, 안경, 시계 및 귀금속, 의약품, 의료기기, 서적, 문구, 화장품, 미용재료, 운동/경기용품, 자전거 및 기타운송장비, 완구, 섬유제품, 화초, 애완동물, 중고가구, 가구, 가전제품, 철물점, 악기, 인테리어

※ 출처 : 국세청 국세통계포털

재보증제한업종

표준산업분류	업종
56211	일반 유흥주점업
56212	무도 유흥주점업
68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 및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해당업종 사업영위자와 사용자(소비자)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공간을 대여해줘, 그 대가로 대여비를 수취하는 경우'로써, 공간임대 외에 추가로 재화 또는 용역(서비스)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앞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 그 외 기타 금융지원서비스업(66199) 중 핀테크 관련 사업에 대한 보증을 지원하는 경우는 제외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다단계판매업. 다만,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 판매자가 동조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앙회장이 지정한 업종